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8

발의연월일: 2022. 1. 3.

발 의 자:이철규·서일준·이양수

유상범 • 김선교 • 정운천

구자근 • 윤창현 • 권성동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 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 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 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 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6호 및 제11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순직산업전사"란 탄광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5(통계작성 및 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순직산업전사"란 탄광근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u><신 설></u>	제11조의5(통계작성 및 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
	하여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공
	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
	<u>할 수 있다</u>
	② 국가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
	황 및 통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u>수 있다.</u>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